

연수도서관 시설 대관 신청

■ 사용범위

- 회의, 교육, 강의 등 공무상 사용, 기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허가한 자

■ 대상

- 인천시민, 기관, 단체 등 10인 이상의 모임 및 단체

■ 운영시간

- 평일(월, 화, 목, 금): 09:00 ~ 17:00
- 주말(토~일): 10:00 ~ 17:00
- ※ 단, 도서관 휴관일(정기휴관일, 국경일, 대체공휴일 등)은 제외
- ※ 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우선 배치 후 유휴공간에 대한 개방
- 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여, 대관신청자는 이용 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여야 함

■ 대관시설

시설명	좌석수	(최소)사용인원	(최대)사용시간	대관문의
연수퓨터 	12	10	3시간 이내	독서문화과 032-899-7542 032-899-7560 F)899-7544
다목적강당 (지하) 	50	20	3시간 이내	관리과 032-899-7521 F)899-7529

■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**사용 15일 전부터 7일전까지**
- **전화문의(유휴공간 등 확인) ⇒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⇒ 공간이용**
- 시설사용(대관)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,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정 등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
- 사용료: 『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29조 규정에 따름

§ 신청서식 다운로드 §

■ 사용제한

- 정치, 종교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- 공공질서 유지 및 미증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그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■ 기타 문의

- ☎ 관리과 032-899-7521

인천광역시교육청
연수도서관

☐ 연수꿈터
☐ 다목적강당

신청인

단체명 (또는 개인명)	연 락 처	
신 청 자	휴대전화	
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대한 동의	1. 항목: 성명, 단체명, 연락처, 휴대전화 2. 수집 및 이용 목적: 신청자 관리,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 3. 보유 및 이용기간: 1년(삭제 요청시,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) ※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
	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	

신 청 내 용

사용목적	
사용장소 (택1)	☐ 연수꿈터 ☐ 다목적강당
사용기간	년 월 일 ~ 월 일, 00:00~00:00 (총 시간)
사용인원	
사용계획	
기타사항	

위와 같이 연수도서관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첨부: 시설 사용 동의서 1부.

년 월 일

단 체 명 (신 청 인 성 명) :

(서명 또는 날인)

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장 귀하

(붙임)

연수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

※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1.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.
3. 사용자는 연수도서관의 비치된 각종 물품(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이용중 발생한 도난·분실·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연수도서관은 사용자의 개인 소지품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4.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시설을 정리·정돈하여야 합니다.
5.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·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 이 경우 본 연수도서관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
6. 사용 장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7.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 - ㄱ. 정치·종교·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 - ㄴ.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
 - ㄷ. 사용 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
 - ㄹ. 건물·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
 - ㅁ.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
 - ㅂ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- ㅅ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
 - ㅇ.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8. 모임 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은 담당자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.
9. 시설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.
10.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, 향후 시설사용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위의 시설 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관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조건에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년 월 일

단체명(신청인 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장 귀하

〈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〉

- 제29조(사용료) ①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별표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

[별표 2] 도서관 사용료(제29조 관련)

1. 시설의 사용료

구 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 고
강당	1시간	30,000	○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○ 토·일은 기준요금의 20% 가산 ○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(단,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)
다목적 홀			
공연장			
회의실			
시청각실	1시간	15,000	
세미나실			
냉 · 난방	1시간	15,000	○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% 요율을 추가징수